

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811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나811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48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태

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18.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248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2019. 5. 2. 접수 제3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D 관리기관인 원고는 소외 E조합지점 동향지점(이하 ‘E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업무수탁기관인 E조합은 소외 C와 사이에 9차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0.

2.부터 2017. 5. 23.까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계 9,700만 원을

대출하며, 이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C이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C은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하였다.

다. 또한 위 각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채무자에게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채무자에게 F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한 신용불량정보 거래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사전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C이 2018. 4.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C에 대해 62,62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위 대출잔금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4. 9. 청구금액 19,383,400원, 2019. 6. 4. 청구금액 63,590,392원의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마. C은 2019. 5.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접수 2019. 5. 2. 접수 제3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41,947,200원이고, C의 소극재산은 합계 292,283,874원이다.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C에 대하여 62,62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1) C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이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담보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C이 이러한 공동담보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모두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C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0.경부터 C에게 트레일러, 잭거터벨트 등의 물품거래를 하던 중 기존 물품대금 39,733,87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금액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C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와 C의 물품거래대금 합계는 75,280,526원인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물품거래대금 합계는 10,740,280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가 C에게 공급하던 위 물품이 C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 사업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C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각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별지